

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969
- 발 의 자 : 김기만 의원(찬성자 10명)
- 발의일자 : 2016년 2월 1일
- 회부일자 : 2016년 2월 2일

2. 제안이유

- 「대한민국국기법」 제12조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교육 또는 홍보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 함(안 제4조).
- 나.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함(안 제5조).
- 다.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6조).
- 라.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2016.2.5.~2.17)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제작·계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국기선양사업 지원
제2조(정의)	- 국기의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 국기 선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제4조(국기 보급사업)	- 국기의 무상 보급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
제5조(국기 선양사업)	- 국기 계양대 설치사업 지원 - 나라사랑 국기 달기 운동 및 국기 사랑하기 운동 추진 -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체 등의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제7조(표창)	-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
제8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

- 본 제정조례안은 국기의 무상 보급 및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국기 보급 및 선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국기 보급을 위한 국가 및 자치구와의 역할 분담 여부 및 서울시재정투자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

※ 참고 1 :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3개 시·도에서 유사조례 제정·운용중

나. 세부 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제3조)

-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국기에 대한 정의 및 시장으로 하여금 국기 선양사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정의 규정에 “국기선양” 내지는 “국기 선양사업”의 정의가 없는 바, “국기선양”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국기 보급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기 무상 보급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그 밖에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동 조항에 따를 경우, 국기의 무상 보급대상(2016년 1월 기준)은 80만 2천여 명으로, 시중의 국기 평균단가*(4,000원)를 고려하면 약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기선양회의 보급형 규격(600×900) 판매가

※ 강북, 노원, 영등포구에서는 국기의 무상 보급을 이미 실시하고 있음.

〈국기 무상 보급 대상〉

(단위 : 명)

연번	자치구	계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2세환자
	서울시	802,925	262,372	392,824	133,623	14,106
1	종로구	12,255	4,361	6,190	1,500	204
2	중구	11,370	3,989	5,758	1,430	193
3	용산구	17,703	6,011	8,323	3,047	322
4	성동구	22,292	7,274	11,754	2,878	386
5	광진구	24,408	7,497	12,501	4,022	388
6	동대문구	32,934	11,506	15,977	4,886	565
7	중랑구	41,140	14,944	19,954	5,618	624
8	성북구	39,017	12,795	18,067	7,502	653
9	강북구	38,383	14,673	17,245	5,929	536
10	도봉구	29,845	9,655	14,852	4,729	609
11	노원구	63,065	24,941	27,399	9,930	795
12	은평구	45,549	17,599	21,405	5,832	713
13	서대문구	25,170	7,203	12,520	5,017	430
14	마포구	27,066	7,752	13,836	5,008	470
15	양천구	33,372	10,478	17,270	5,030	594
16	강서구	57,679	20,238	28,001	8,527	913
17	구로구	33,140	8,442	17,277	6,757	664
18	금천구	23,330	9,536	10,899	2,555	340
19	영등포구	27,893	8,627	14,791	3,958	517
20	동작구	28,930	7,148	14,592	6,566	624

21	관악구	39,132	12,379	20,231	5,760	762
22	서초구	22,498	4,759	10,894	6,273	572
23	강남구	34,879	11,550	15,813	6,886	630
24	송파구	38,340	9,205	19,580	8,712	843
25	강동구	33,535	9,810	17,695	5,271	759

※ 기초생활수급권자(희망복지지원과), 장애인(장애인자립지원과), 국가유공자(복지정책과) : '16. 1월 기준, 고
 업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국가보훈처) : '15. 12월 기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포함됨)

※ 출처 : 서울시 내부 조사자료

- 안 제4조 국기 보급사업 규정에 대하여 집행부는 보급 대상을
 특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임의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국기의 무상 보급을 통해 국기를 보유할 수 있는
 세대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무상
 보급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국기의 무상 보급 절차,
 횟수 및 이미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와의 중복지원 문제 등 국가
 ·서울시·자치구와의 역할분담(보조금 매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본 규정
 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이미 국기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 파악과 국기보급만이 아닌 국기계
 양 등이 가능하도록 국기꽃이 등의 설치 및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국기 선양사업 및 단체 등의 지원(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는 시장이 국기 계양대 설치사업(제1호), 나라사랑 국기 달기
 운동(제2호) 등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는 상위법¹⁾에 따라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

1)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
 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단체 등 지원시 지원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표창(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장이 국기 계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포상기준 등이 미비한 바, 시행규칙에 국기 선양 실적에 따른 포상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제8조 생략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국기선양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 례 명(제정연도)	비 고
1	강원도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14.1.3)	
2	경기도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15.7.17)	
3	경상북도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15.4.6)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국기사랑 지원 조례(12.8.1)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14.5.20)	
6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15.6.15)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15.10.1)	
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14.1.9)	
9	전라남도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15.4.8)	
10	전라북도	전라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15.10.12)	
11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14.4.2)	
12	충청북도	충청북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15.1.1)	
1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13.11.8)	